##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23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성원·성일종

박덕흠 • 이종욱 • 김상욱

정동만 · 송석준 · 엄태영

서천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,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(顯忠施設)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현충시설(顯忠施設)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 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	제9조(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
준보조율 등) ① (생 략)	준보조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	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현충시
	설(顯忠施設)의 건립 및 관리
	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
	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
	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.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